#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48

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김승남・이상민・양경숙

맹성규 · 정청래 · 이성만

이규민 • 이개호 • 김승원

신정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자동차관리법」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·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,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고,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농업기계제조·판매자 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,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

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"표시의무"를 "표시 및 고지의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(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 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(제조일을 말한다)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)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와 수입업자(이하 이 조에서 "농업기계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가 제9 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.

- 1.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 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 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
- 2.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(주행거리가 5천킬로미 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)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
  - 가.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(이하 "중대한 하자"라 한다)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자등(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. 다만,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.
  - 나.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농업기계제조자등(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. 다만, 1회 이상 수리한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.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(이하 "하자농업기계소유자" 라 한다)는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,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 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

실을 농업기계제조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 그리고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농업기계 <u>표</u> 시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의무) ① 제9조의2(농업기계 <u>표시 및 고지</u>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 입업자(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
	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 다)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(제조일 을 말한다)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 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
	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의2 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 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 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 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0조의2(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) ① 농업기계의 제 조업자와 수입업자(이하 이 조 에서 "농업기계제조업자등"이 라 한다)가 제9조에 따른 농업 기계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

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 기계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 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.

- 1.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 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된 농업기계
- 2.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(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)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
  - 가.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
    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
    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
    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
     (이하 "중대한 하자"라 한
     다)로 인하여 농업기계제

조자등(농업기계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 은 자를 포함한다)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그 하 자가 재발한 농업기계. 다 만, 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.

나.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중 상의 하자를 농업기계제조 자등(농업기계 제조업자등 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,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. 다만,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의 소유자(이하 "하자농업기계 소유자"라 한다)는 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1회, 같은 호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(과태료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 계제조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보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 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 그리고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 우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고 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